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06호
2. 발 의 자 : 김경자(양천) 의원
3. 발의일자 : 2017. 10. 31.
4. 회부일자 : 2017. 11. 1.

II . 제안이유

-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통하여 학생 등으로 하여금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I . 주요내용

1. 교육감의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2.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3.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조례안 참고)

3. 기 타 :

○ 입법예고(2017. 11. 6.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7년 10월 31일 김경자(양천)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206호로 발의되어 2017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을 보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학교환경교육의 법령체계와 조례안의 제정 취지면에서의 검토

- 지난 2005년 UN이 ‘지속가능한발전교육 10년’을¹⁾ 지정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 대상에 포함되는 환경교육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환경부에서는 2010년(제1차)과 2016년(제2차)에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의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청도 이런 국가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원 연수’ 등의 학교환경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별첨〕 참고).

물론 학교환경교육도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란(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UNESCO는 이를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음.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는 환경교육을 비롯하여 평화교육, 인권교육, 소비자교육, 개발교육, 보건교육, 생물다양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교육 등 모든 범주의 주제교육이 서로 긴밀히 연계될 수 있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의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2014.11.3. 참고)

동 법은 학교환경교육 이외에도 사회환경교육 등 포괄적인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법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 상의 특수성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환경교육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체계

○ 동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등 총칙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장학자료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감이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환경교육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체계를 교육청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교육혁신과-22374, 2017.12.5).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

2016~2017 환경교육 추진 현황 및 예산 내역

I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

□ 학교급·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교과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환경교육 실시 권장(7시간 이상)
 - 초등 환경교재 「초록보물찾기」 활용한 환경교육 운영
 - ※ 초록보물찾기를 활용한 환경교육 실시 현황 : 총 582교에서 활용 및 교육실시
 -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선택을 통한 환경교육 운영
 - ※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선택 현황 : 중 16교, 고 54교(2016년 12월 기준)
- 교육청 개발 환경교육 지도자료 및 환경부 교육자료 지속적 안내
 - (교육청)중 1 환경교육 지도자료, 중 2·3 환경교육 지도자료 및 REM 등
 - (환경부)환경교육포털사이트 「초록지팡이」 교수·학습안, e-교육자료, 환경 교육체험 길라잡이, 환경교재 등 활용 안내

II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원 연수

1.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 적 : 청소년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 생활화 및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생활화 유도
- 운영 기간 : 3월 ~ 12월
- 운영 내용 :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함양 위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운영 예산	비고
2016년	초·중·고 25교 (초12, 중2, 고11)	교당 220만원 (환경부 160만원, 서울시교육청 60만원)	55,000,000원 (25교×2,200천원 = 55,000천원)	▫환경부 국고보조금 : 4천만원 ▫서울시교육청 : 1천5백만원
2017년	초·중·고 14교 (초6, 중2, 고6)	교당 120만원	16,800,000원 (14교×1,200천원 = 16,800천원)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종료로 인한 지원 규모 축소

2. 아름다운 학교생태정원가꾸기 사업 운영

- 목 적 : 꽃 가꾸기 활동을 통한 생명존중 태도 및 올바른 인성 교육 토대 마련
- 운영 기간 : 1월 ~ 12월
- 운영 내용 : 생태감수성을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생태환경조성 및 교육 운영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운영 예산	비고
2016년	초·중학교 31교 (초19, 중12)	교당 2천5백만원	775,000,000원 (31교×25,000천원 = 775,000천원)	▫교육청-서울시 협력 사업으로 운영 ▫서울시 전입금
2017년	초·중학교 40교 (초27, 중13)	교당 2천5백만원	1,000,000,000원 (40교×25,000천원 = 1,000,000천원)	▫교육청-서울시 협력 사업으로 운영 ▫서울시 전입금

3. 학교정원가꾸기 지원단 운영

- 목 적 : 학교생태정원·학교텃밭 전문적 운영 지원 통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 운영 기간 : 3월 ~ 12월
- 운영 내용 : 학교생태정원 및 학교텃밭 운영 컨설팅 지원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운영 예산	비고
2016년	초·중·고	10명 × 30회 내외	21,600,000원	▫서울학생, 꽃과 친구 되다 사업 연계 운영
2017년	초·중·고	10명 × 30회 내외	21,600,000원	▫서울학생, 꽃과 친구 되다 사업 연계 운영

4. 학교정원가꾸기 자료집 개발

- 목 적 : 학교생태정원 가꾸기 우수학교의 사례 보급 통한 생태환경교육 일반화
- 운영 기간 : 9월 ~ 12월
- 운영 내용 : 학교정원가꾸기 자료집 개발 및 보급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운영 예산	비고
2016년	초·중·고	1,600권 (책자 형태 보급)	20,000,000원	▫아름다운 학교정원 가꾸기 사업 연계 운영
2017년	초·중·고	PDF 형태로 개발하여 초·중·고 보급	6,000,000원	▫아름다운 학교정원 가꾸기 사업 연계 운영

5. 꽃사랑 환경동아리 운영

- 목 적 : 학교생태정원·학교텃밭 전문적 운영 지원 통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 운영 기간 : 2월 ~ 12월
- 운영 내용 : 학교생태정원 및 학교텃밭 운영 컨설팅 지원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운영 예산	비고
2016년	초·중·고	460교 내외 (교당 100만원 내외)	약 291,550,000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운영
2017년	초·중·고	330교 내외 (교당 100만원 내외)	약 366,348,000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운영

6. 자원 재활용 실천 운동 전개

- 목 적 :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실천 마인드 제고 및 환경보전의식 고취
- 운영 기간 :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운영 대상 : 초·중·고등학교
- 운영 내용 :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건전지 수거 및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전개
- 운영 예산 : 없음(학교의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

7. 학교정원가꾸기 직무연수 운영(과학전시관)

- 목 적 : 학교정원가꾸기를 통한 교원의 생태·환경교육 전문성 신장
- 운영 기간 : 5월 ~ 10월
- 운영 내용 : 학교생태정원 및 학교텃밭 운영 컨설팅 지원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운영 예산	비고
2016년	초·중등학교 교원	512명 (교사 192, 관리자 320)	130,000,000원 (교사 22,400천원+ 관리자 85,200천원)	▫과학전시관 운영
2017년	초·중등학교 교원	512명 (교사 192, 관리자 320)	130,000,000원 (교사 22,400천원+ 관리자 85,200천원)	▫과학전시관 운영

8. 토요일가족생태환경교실 운영(과학전시관)

- 목 적 : 가족 단위의 생태 체험을 통한 친환경 녹색교육 및 자연친화적 마인드 제고
- 운영 기간 : 4월 ~ 12월
- 운영 내용 : 생태체험관 활용 생태교실, 숲체험, 생태탐구학습 등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운영 예산	비고
2016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	1,440명 (본관 12회, 분관 24회)	13,710,000원 (본관 4,680천원+ 남부 9,030천원)	▫과학전시관 운영
2017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	1,440명 (본관 12회, 분관 24회)	14,430,000원 (본관 4,680천원+ 남부 9,750천원)	▫과학전시관 운영

관계 법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46호, 2017.3.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